

대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

제정 2016. 9. 1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 부속기관으로 설치된 대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.)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부, 학생학습지원부, 행정실을 둔다.
- ④ 교육매체 및 학습지원 자료 개발을 위한 연구교수 및 협력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그 업무는 교무과에서 수행한다.

제3조(업무)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대학교육 관련 연구개발
- 2. 교수 및 학습 매체 지원
- 3. 학생 학습역량강화 자료 연구 및 개발
- 4. 학생 기초학습 역량강화 자료 연구 및 개발

제2장 운영위원회

제4조(설치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
- ②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운영계획 및 정책의 수립